

韓國圖書館協會

表彰規程 內規

第1條 (目的) 이 內規는 本會의 表彰規程에 의한 表彰事業의 施行에 必要한 事項을 規程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表彰의 種類) 表彰의 種類는 表彰規定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功績賞 研究賞 勤績賞으로 區分하고 이를 會長이 表彰한다.

第3條 (功績賞, 研究賞) 功績賞과 研究賞은 다음의 境遇에 授與한다.

- ① 功績賞은 個人 또는 團體가 建設의이고 創意的인 活動을 하여 全體 圖書館 運營과 發展에 顯著한 功績이 있다고 認定되는 경우에 授與한다.
- ② 研究賞은 個人 또는 團體가 創意的인 著作 活動을 하여 圖書館 事業과 運營에 寄與한 바 顯著한 研究業績이 認定되는 境遇에 授與한다.

第4條 (勤績賞) 勤績賞은 다음과 같이 授與한다.

- ① 圖書館 業務에 20年 以上 誠實히 從事한 現職 圖書館人.
- ② 勤績 年功은 表彰 內容에 表示하여 區分한다.
- ③ 勤績 年限의 算出은 圖書館界에 從事한 期間만을 合算하여 算出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5條 (受賞候補者의 推薦) 表彰規程 第6條에 規定한 推薦權者는 別紙 第2號 書式에 의한 功績調書와 其他 必要한 書類를 添附하여 推薦한다. 다만 地區 協議會가 結成되지 않은 地域의 表彰 對象者는 事務局에서 調査하고 別紙 第3號 書式에 의하여 專門委員會 委員長이 推薦할 수 있다.

第6條 (審査委員會의 構成) ① 會長은 表彰規程 第7條 第4項의 規程에 따라 審査委員會를 委囑하되 部會의 組織이 없는 館種은 그 館種을 代表할만하다고 認定되는 사람에게 委囑한다.

②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7條 (委員의 身分과 手當)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出席 委員은 豫算의 範圍內에서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8條 (委員長의 職務) ① 委員長은 會務를 總轄하며 會議의 議長이 된다.

② 委員長은 別紙 第1號 書式에 의하여 審査 決議書를 作成하여 表彰 豫定日 20日 前에 功績調書를 添附하여 理事會에 提出하고 議決을 要請하여야 한다.

③ 副委員長은 委員中 專門委員會 委員長이 된다.

④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고 委員長이 有放時에 그 職務를 代行한다. 委員長 副委員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中에서 呼選된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9條 (委員會의 議事) 委員會는 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 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10條 (委員會의 召集) 委員會는 必要時에 委員長이 召集한다.

第11條 (施賞의 方法) ① 受賞者에게는 別表 1號의 規格外에 의한 賞牌를 授與하고 副賞은 豫算 範圍內에서 定한다.

② 代理者에게 施賞을 할 때에는 施賞 豫定日 3日 前에 委任狀을 提示 받아야 한다.

第12條 (表彰 決定의 通告) 事務局은 決定된 受賞者의 名單을 即時 推薦者 또는 本人에게 通告한다.

第13條 (二重 表彰의 禁止) 本 規程에 依한 表彰은 同一한 功績에 대하여 二重으로 施行할 수 없다.

第14條 (表彰簿의 備置) 事務局은 表彰된 者에 대한 名簿를 別紙 第4號 書式에 의하여 備置하여야 한다.

第15條 (改定) 이 內規는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改正한다.

附 則

① 이 內規는 1969年 2月 3日부터 施行한다.

② 이 內規는 1968年度에 施行되는 表彰부터 準用된 것으로 看做한다.

한국서지사업회 위원명단

회 장	강주진	정치학	한국도서관협회장
부회장	이창세		한국도서관협회 전무이사
고 문			학술원장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자문위원	전혜성	사회학	미 예일대학교
기획위원회			
도서관계	김두홍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사무국장
	박희영		한국의국어대학 도서관 사서장
	천문암		한국연구원장
	최근만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장
(학 계)	성기수	기계공학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전자계산실장

손보기	사학	연세대학교 박물관장
기술위원회 (도서관계)김세익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학과 교수
박대권		한국도서관협회 총무부장
사공철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정립과장
(학 계) 한기춘	경제학	연세대학교 교수
한태동	신 학	연세대학교 교수
이명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전자계산실
인문과학위원회 (도서관계)김석순		건국대학교 도서관 부관장
성택경		국회도서관 참고서지과장
윤여택		국회도서관 참고서지과장
이재철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학 계) 김동욱	국문학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박성의	국문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장
백순재	신문학	경희대학교 신문학과 교수
이기문	국어학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이기영	종교철학	동국대학교 교양학부장
이상은	동양철학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장
홍이섭	사 학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자연과학위원회 (도서관계)김중희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자료부장
박계홍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도서실장
이정호		한양대학교 도서관 사서과장
정필모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학 계) 박기채	화 학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교수
이민재	이 학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조복성	생물학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교수
조순탁	물리학	서강대학 교수
정문기	어류학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최기철	생물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한만춘	전자공학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교수
사회과학위원회 (도서관계)이철규		국회도서관 도서과장
이춘희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임중순		연세대학교 도서관 정립주임
장일세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과장
정병완		국립중앙도서관 열람과장

(학 계) 고영복	사회학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김종철	교육학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박봉식	정치학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교수
이승윤	경제학	서강대학 교수
이한빈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함병춘	법 학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교수
고문헌위원회 (도서관계)백 린		서울대학교 부속 도서관 사서과장
이창교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정형우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천혜봉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학 계) 김철준	사 학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교수
남광우	국어학	중앙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윤남한	사 학	중앙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이홍직	사 학	고려대학교 교수
차주환	중문학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최영희		국사편찬위원회
한우근	사 학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 한국서지사업회 규정(개정)

개정 1968년 11월 28일

- 제 1 조** (명칭 및 설치)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이하 도협이라 약칭한다) 정관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서지사업회 (이하 본회라 약칭한다)를 도협 내에 설치한다.
- 제 2 조** (목적) 본회는 각종 자료를 조사 평가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이를 종합 또는 자동화 함으로써 한국의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에서 간행된 각종 자료의 조사 및 평가.
  2. 한국에서 간행된 각종 자료의 주제별 및 종합서목의 편찬.
  3. 한국에서 간행될 학술집지의 색인 편찬.
  4.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간행 학술자료의 주제별 및 종합서목의 편찬.
  5. 한국연구에 필요한 서목 편찬.
  6. 자료 부계의 알선.

- 7. 서지 자동화의 보급 및 종합.
- 8. 국내의 관계 기관과의 서지적인 정보자료 및 기술 교환.
- 9. 서지사업을 위한 요원의 훈련.
- 10.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타기관과의 협력)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을 국내의 타기관에서 계획하거나 또는 하고 있을 시에는 본회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 이를 수행토록한다.

제5조 (조직) 본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조직한다.

- 1. 회 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상임위원 약간명
- 4. 위 원 약간명

제6조 (임원의 임명)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 1. 회장은 도협 회장이 된다.
- 2. 부회장 1명은 도협 전무이사가 겸임하고 다른 1명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3. 상임위원은 각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이 겸임한다.
- 4. 위원은 자료의 종별, 주제분야 또는 사업내용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준비위원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도협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고, 위원 및 상임위원의 임기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끝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윤번으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위원은 각 위원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을 진다.

4. 위원은 자료의 종별, 주제별 또는 사업 내용별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료의 평가, 조사, 연구, 편찬 및 자동화 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은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조사원)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각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및 조사원 약간명씩을 둘 수 있다.

간사는 도협 직원으로서 도협 사무국장의 내신으로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조사원은 상임위원의 내신으로 회장이 임명하되 도협 사무국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11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2중으로 하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는 출석자 3분의 2로서 결정한다.

각 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 (재정) 본회 경비는 도협 서지사업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도협 이사회가 의결한 196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佛蘭西에 있어서의 公共圖書館의 改善方案

佛蘭西에서는 公共圖書館의 組織 및 運營에 있어서의 諸問題들에 對한 改善을 研究 檢討하기 爲하여 公共圖書館委員會를 組織하고 그 改善 方案을 마련하였다.

그 要旨를 보면 ① 全國적으로 公共圖書館網을 組織하고 行政府에 圖書館 擔當機構를 設置하여 이 機構에서 公共圖書館에 對한 積極的인 援助를 한다. ② 各 地域마다 圖書購入 및 整理 센터를 設置하여 그 地域內 圖書館에 對한 技術指導를 擔當케 한다. ③ 司書들이 利用할 수 있는 專門的인 文獻메이선 센터를 設置한다. ④ 圖書館 建築 및 設備에 關한 諸問題를 取扱하는 奉仕機關을 設置한다. ⑤ 國立圖書館 司書와 地方自治團體 所屬下의 司書職에 對한 處偶의 格差(差異가 심한듯 함)를 解決하기 爲하여 全公共圖書館의 職員을 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⑥ 國立中央貸出圖書館을 設立한다. ⑦ 國民의 讀書生活를 向上시키기 爲하여 兒童圖書館 및 學校圖書館을 바람직하게 育成시킨다. 以上과 같이 公共圖書館의 組織 및 運營에 關한 改善 方案을 提起하고 있으며 이 外에도 全國的인 各級 圖書館의 當面한 問題點等 改善點을 研究하기 爲하여 4 個의 委員會가 構成되었다고 한다.

(編 輯 室)